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가단13283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기, 이중석, 이용호, 박지연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영

**변론 종결**2021. 3. 23.

**판결 선고**2021. 4. 13.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767,202원과 그 중 19,980,880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8,268,012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5.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5,454,54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는 원고에게 15,454,5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6. 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20,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9. 6. 9.,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 B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D는 2015. 8. 3.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E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각 통지되었다.

나. 또한 피고 B은 2014. 6. 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10,000,000원을 만기일자 2019. 6. 9.,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34.9%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후 피고 B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F는 2018. 11. 14.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통지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2477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8. 2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미 그 무렵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피고 B의 아버지인 G이 2016. 3. 4.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C(G의 처이자 피고 B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인 피고 B, H, I, J이 2016. 5. 26. G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9. 7. 26.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2020. 6. 18. 기준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은 52,562,685원(= 원금 19,980,880원 + 인수전 이자잔액 20,816,494원 + 인수후 이자잔액 11,765,311원)이고, 위 나.항 기재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은 13,204,517원(= 원금 8,268,012원 + 인수후 이자잔액 4,936,505원)이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의 양도인인 E와 F는 모두 대부업 및 소비자 전문금융기업으로 채무자의 재산 조사와 같은 정보 접근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의 '매도인 진술, 보장 및 약정사항' 등에 따라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피고 B에 대한 자산 관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양수인인 원고 역시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 등에 따라 채권양수 당시 채권양수 여부 결정을 위한 분석과 실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의 양도인 및 양수인으로서 각 채권양도일인 '2018. 10. 26.'경 및 '2018. 11. 14.'경에는 2016. 5. 26.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존재하였고 그 행위가 취소원인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 때로부터 각 1년 이상 경과한 2020. 7.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수도 계약서에서 제4조로 '매도인의 진술, 보장 및 약정 사항'을 두어 채권양도인이 자신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고 채권양도 거래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로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을 두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수와 관련된 기록들에 대한 실사와 분석을 수행하도록 권고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자산매매계약서에도 제4조 '매도인의 진술, 보장 및 약정사항'과 제6조 '매수인의 진술, 보장 및 약정사항과 당사자들의 추가 약정사항'을 두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인인 E 및 F나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고 채권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필요하고 적절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담은 위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E 및 F나 원고가 각 채권양도일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금 합계액인 65,767,202원(= 52,562,685원 + 13,204,517원)과 그 중 19,980,880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89%의, 8,268,012원에 대하여는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피고 B이 2014. 6. 9. D로부터 20,000,000원을, F로부터 1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이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2018. 10. 26. 및 2018. 11. 14.

원고가 위 각 차용금채권을 양도받았으며,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 B에게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양수받은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6. 5. 26. 이전에 성립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아버지인 G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피고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은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은 그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딸인 피고 B이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나 다수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까지도 피고 B의 구체적인 경제사정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피고 C 부부가 살던 곳으로 자식들이 남편의 죽음에 상실감에 빠진 피고 C가 계속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C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일 뿐으로 그것이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과 같이 자식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연로한 모친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자신들의 법적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에 무지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해야 할 것을 제도를 잘못 선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들이 상속의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의 포기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9.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65,767,20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L의 2021. 1. 15.자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14. 12. 22. 채권최고액이 72,000,000원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60,000,000원이었고 2021. 1. 14. 기준으로 한 대출잔액은 51,876,606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45,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은 15,454,545원 [= 85,000,000원(= 145,000,000원 - 60,000,000원2) ) × 2/11(상속지분),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에게 가액배상할 금액은 위 책임재산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인 15,454,545원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5. 26.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454,54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5,454,5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회

별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5. 7. 30.부터 2019. 6. 11.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월 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5,998,230원(= F 대출금 관련 1,987,605원 + D 대출금 관련 4,010,62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구하는 양수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변제한 금액은 이미 반영되어 청구취지 금액이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51,876,606원에서 60,000,000원 사이의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 C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인 60,000,000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본다.